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3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9. 8. 7.(수) 09:31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호성 위 원 장
김석진 부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
허 욱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3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1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9년도 제3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37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9-38-152)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안건 가> “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붙임 1>과 같이 의결한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54조에서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송신지원’의 범위를 정하는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자 함입니다. <3> 추진경과입니다. ‘19년 4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었습니다. 4월 24일 「방송법」 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드린 이후 5월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조회를 실시한 결과, 접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KBS·EBS가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은 <붙임 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 주요내용입니다. KBS가 행하는 EBS에 대한 송신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시행령 위임 규정인 제54조제4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조문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향후일정입니다. 오늘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안건 상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위원님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이 안건은 지상파 UHD의 송신 지원 범위에 대한 사업자 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4월 이 안건 보고 때, 이 문제는 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입법예고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침부한 KBS와 EBS의 의견제출 내용을 보면 여전히 양자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KBS는 송신지원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과잉 행정입법이고, KBS가 EBS 송신지원

일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EBS는 송신지원의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도 방송법에 송신의 개념 정의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법률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송신의 개념을 EBS를 위해 방송법에 한정하여 정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두 회사 간 합의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임을 의견수렴 과정에서 다시 확인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가 법적 근거에 따라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결 주문에 동의하며, 사무처에 당부드립니다. 제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이고, 여야 대립 국면과 KBS의 반대의견을 감안할 때 오늘 의결한 안건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제3기에서부터 넘어온 것이고, 제4기 위원회가 해결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처리 법안으로 지정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내용은 허 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생략하고 일단 원안에 동의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양 방송사업자들이 제출한 의견을 보면 KBS 쪽에서는 '신규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전액 부담을 KBS에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 재정적 근거인 수신료 인상이 전제되어야만 EBS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기술에 대한 KBS의 지원에 대해 마찬가지로 수신료나 재정 확보에 대한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KBS가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수신료는 2017년도 3월 위원회에 보고드릴 당시 수신료 징수율의 범위에 대해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서 지속적으로 담보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한 사업자 의견을 보면 조금도 서로 접점이 없습니다. 계속 지금까지 해오던 주장을 양쪽에서 평행선을 달리듯이 의견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KBS와 EBS 양자 간 합의와 협의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떻게든 이것이 안 되니까 매번 그 협의가 깨지지 않습니까? 결렬되니까 결국은 규정을 송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자,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을 사업자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방송법 개정 후 시행령을 만들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송신 범위를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업자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서 원만하게 잘 조정될 수 있도록 사무처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원안에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것이 제3기 때부터 논란이 됐던 것인데 결국은 방송법 개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KBS가 EBS에 송신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송신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신료 배분 비율과 연동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신료 배분 비율을 정하되, EBS에서 이야기했던 부족한 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송신 지원이라는 방법을 통해 조금 더 보전해 주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수신료 인상이 되어야겠지만 KBS와 EBS 간 수신료 배분, 이것이 지금 KBS 수신료가 아니고 공영방송 수신료로 국민들께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전체적으로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번에 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럴 계획인 것이지요?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다 보면 EBS에서 예를 들어 최초 송신소인 관악산까지 전파를 보내는 장비,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등 이런 것들의 구축비용은 현재 관행적으로 EBS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행들도 예를 들어 관행을 바꿀 것인지, 아니면 이런 관행은 인정하는 전제 하에서 송신의 범위를 규정할 것인지도 분명히 고려사항으로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KBS, EBS 두 방송이 다 공영방송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송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이 재원 문제와 관련해서 파생된 문제들이고, 공영방송의 공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이 해결되어야겠지요. 그래서 오늘 방송법 개정안에 관한 것은 당연히 원안에 동의하고 우리 방통위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외에도 KBS와 EBS 사이에 다툼이 있는 수신료 배분 문제와 관련해 수신료 징구비용을 제외하고 3% 배분해 줄 것이냐, 수신료 전체 징구액에서 3%를 배분해 달라는 EBS의 요구도 있어 아직까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법 개정안을 저희들이 처리해서 국회로 보내서 이것은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하고, 다음에는 수신료 배분 문제도 다시 한 번 검토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9-38-153)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의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체계, 문구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제안이유입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의 금지행위 조사 관련 자료제출 규정 등을 신설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입니다. 금년 4월에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드렸습니다. 관계기관 협의 및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쳤고,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 심의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금지행위 조사 관련 자료제출 규정 신설입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방송법 제85조의2제4항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 자료제출 규정 신설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방송법 제94조제1항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료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 의견입니다. 한국방송협회에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과태료 부과 금액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 상한선을 3,000만원 이하로 올려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IPTV법 과태료 상한선이 1,000만원 이하이므로 타 위반 행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불수용하는 의견입니다. IPTV법 아래에 나타나 있는 것에 보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요금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경우 등 모든 경우에 1,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어서 다른 법을 동시에 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료제출 근거 조항 구체화 필요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방송법 제98조제1항에서는 일반적인 자료제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제3항에서는 '시청률, 시청점유율 등 조사 및 산정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번 개정 시에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자는 의견입니다. 조치결과 불수용 입니다. 동 개정안은 일반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한 자료제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수용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금년도에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이 안건은 입법 미비사항이었던 IPTV 사업자의 금지행위조사 관련 자료와 일반 자료제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늦었지만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해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방송사업자와 IPTV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을 이루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가입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IPTV 사업자에 대해 사후 시장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지난 4월에 이 안건을 보고할 때 위원장님께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방송법으로 포괄해도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셨는데 저 역시 같은 의견입니다. 따라서 방송법과 IPTV사업법이 통합 등 국회 과방위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처리되기를 희망합니다. 사무처에서 조금 전에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이나 이번 IPTV사업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시지요.

○ 표철수 상임위원

- 특별히 의견 없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특별히 의견이 더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 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2018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마지막으로 <보고안건 가> “2018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배춘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배춘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2018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입니다.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및 미달사업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경과와 관련하여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방송사들로부터 장애인방송 제공 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점검하였으며, 장애인방송 시청보장위원회가 지난 6월에 실적평가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평가 대상은 2018년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인 134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실적이 되겠습니다. 각 방송사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는 사업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필수지정사업자인 지상파방송 보도·종편PP는 자막 100%, 화면해설 10%, 수어 5%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성방송의 경우에는 이보다 완화된 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시의무사업자의 경우에도 SO와 일반PP에게는 일부 차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시의무사업자는 지정시기를 고려하여 1차 연도에 비해 2차 연도, 2차 연도에 비해 3차 연도 등의 의무비율을 높여 가는 방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 134개사 중 112개사가 편성의무를 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사업자는 본사 및 18개 지역국을 포함한 KBS, MBN, 서경방송, 디즈니채널코리아 등 총 22개입니다. 참고로 KBS는 방송법상 단일사업자이지만 장애인방송 편성과 관련하여 지역총국에서도 일부 자체 편성물이 있어서 이를 별도의 평가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우선 달성률을 보시면 KBS와 MBN의 경우 자막에 대해 99.9%의 달성률로 100%에 근소하게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SO인 서경방송의 경우 자막 85%, 화면해설 95%의 달성률을 보였고, PP인 디즈니채널코리아는 자막·화면해설·수어에서 86~87%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장애인방송 시청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박스 안에 있는 편성의무 미달성사업자 위반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KBS의 경우에는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네트워크 장애, MBN의 경우에도 도로공사로 인한 네트워크 장애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서경방송과 디즈니채널코리아는 앞서 말씀드렸던 고시의무사업자는 편성비율이 고시지정 1차 연도에 비해 2차 연도가 더 상향됨에도 2차 연도에도 1차 연도 의무비율만 달성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달성률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하여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미달성 사업자 모두 고의성이 크지 않고, 특히 KBS와 MBN은 네트워크 장애 이후 망 이중화가 구축된 점을 고려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KBS와 MBN이 네트워크 장애 사유에 대해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예외 인정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술적 문제로 인한 미송출은 이중망 구축 등으로 사전 대처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불가항력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무엇보다 자막방송이 송출되지 않은 것은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일반 방송이 정파되는 상황과 동일한 수준임을 감안해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미달성 사업자에 대해서는 2020년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시 일정 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8월 중으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미달성 사업자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으며, 내년 3월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시 미달성 사업자에 대해서는 달성률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등을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방송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장애인방송 제공의무를 지니고 있고 매년 실적 평가를 받습니다. 올해 평가를 보니까 장애인방송 의무화 제도가 비교적 양호하게 정착해서 방송사업자의 준수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평가결과 미달 사업자가 22개 방송사업자로 집계되었지만 KBS 본사와 18개 지역국을 고려하면 크게 보면 4개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위반사유를 보면 KBS나 MBN는 네트워크 사고이고, 서경방송이나 디즈니채널코리아는 내부 직원의 업무 실수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에 대한 방송사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방송사업자에게 아쉬운 점은 방송사와 제작사 간, 방송사와 송출지점 간 망 이중화가 방송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서 필수적인데도 비용 부담 문제로 인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에 방송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장애인방송 제작지원금의 부분삭감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러나 방송법상 장애인방송과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공의무는 방송사업자의 공적책무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적인 달성만이 아니라 질적인 고도화도 필요한 사안임을 방송사들이 깊이 인식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지금 국가기간방송인 KBS가 장애인방송 폐쇄자막을 내보내지 못해서 100% 달성 못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 결과적으로 KBS에 대해, 물론 고의성이 아니고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해 네트워크 장애가 생겼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MBN도 역시 '도로를 굴착하다가 네트워크 선이 파손되는 바람에 장애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고 의성이 없고, 또 외부 요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단순히 장애인방송의 제작지원금을 감액하는 것으로만 대응한다는 것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장애인방송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벌칙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과태료 등 규정이 없습니까?

○ 배춘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별도로 과태료 조항은 없고, 저희가 방송평가할 때 편성영역에서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 평가라고 해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편성영역 270점 만점에 50점이 배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도 세부 평가 세칙까지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이것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정도로 평가제를 운영 하면 그나마 실효성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장애인방송의 제작지원금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액수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내년도 장애인방송 제작 정부지원금이 이렇게 되면 KBS는 얼마 정도 감액되는 것입니까?

○ 배춘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KBS는 총 사업비가 25억원 정도 되고 그중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2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번에 99.9%로 100%를 못 했기 때문에 감액을 당하면 지금 추정하는 것으로는 대략 1,300만원 정도 지원금에서 삭감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25억원 비용에 1,300만원 같으면 비중이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는 제가 볼 때 패널티로 보기에는 못 미치지 않느냐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KBS, MBN이 네트워크 장애 이후 망 이중화를 구축한 것입니까? 앞으로 네트워크 장애가 생길 가능성은 없다는 것입니까?

○ 배춘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일단 KBS와 MBN은 망 이중화 구축을 했고, 지난번에 KT 아현국사 화재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방송사들이 자체적으로, 가령 EBS나 SBS도 본인들이 그때 사고가 나지 않았지만 이후 망 이중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특히 국가기간방송 KBS도 갈수록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는 종편 등 필수지정사업자인 경우는 장애인방송의 편성 의무 비율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주지시켜야 하고, 또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5억원 중 1,300만원 정도만 감액하는 것으로는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검토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춘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1,30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은 상대적으로 KBS가 달성률이 99.9%이기 때문에 1,300만원을 감액 당하는 것이지, 만약 다른 SO들이나 PP들처럼 85%, 90% 이렇게 되면 감액의 비중은 훨씬 커집니다. 다만, 99.9%에 대한 감액을 하다 보니까 금액도 상대적으로 저희가 체감하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KT 아현지사 화재 때 KBS 네트워크선만 건드린 것입니까? 다른 MBC나 SBS 필수지정사업자 다른 데는 피해가 없는데 왜 KBS만 이렇게 네트워크 장애가 생긴 것이지요? 혹시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 김재영 사무처장

- 혹시 KBS는 KT망을 임차했고, MBC나 SBS는 KT망이 아니거나 KT 아현국사에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MBC나 SBS는 상담동이나 목동에 있어서 망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만 KBS의 경우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KT 아현국사 화재로 인해 정말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KT라는 기간통신 사업자의 중요한 시설이 부실하게 관리·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방송사들도, 여기에는 케이블 방송사도 포함됩니다, 어떤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방송서비스가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이번에 다 점검해서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에 대해 거기에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년 장애인방송 이행실적 점검할 때마다 지적한 것입니다만 과장님, 화면해설 방송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청각장애에 비해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토크 프로그램이나 뉴스 그리고 음악 프로그램들을 들을 수 있지만 그래도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화면해설방송 비율이 10%로 정해진 근거가 있습니까?

○ 배춘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초기에 저희가 고시 시행에서 쪽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비율을 높여 왔고,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는 것은 처음에 6~7년 전에 장애인방송 비율에 대해 정책적인 시행을 하면서 그래도 당시에 세계적으로 가장 장애인방송이 제일 잘 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영국의 사례를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고시에 나와 있는 비율이나 관련 규정들이 영국에서 하고 있는 정도의 규정들을 준용한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비율도 그때 당시 영국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미디어 이용에 대한 수요, 콘텐츠 이용에 대한 수요나 요구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특히 미디어가 다양하게 보급되면서 실제로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들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 년째, 물론 목표치를 달성했기 때문에 10%에 멈춰 있지만 화면해설방송 목표치 10%가 적정한 것인지, 특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 이것에 대해 만족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느냐면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기준으로 보면 청각장애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비율이 엇비슷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청각을 통해 방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충분한 방송서비스 이용을 하는 것은 아님

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애초에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현재 화면해설방송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방송사업자들은 충분한 장애인방송을 제공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정도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10%하니까 영국의 수치 정도 달성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보다도 우리가 방송에 있어서는 훨씬 더 선진국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작은 부분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들, 시청자들을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잘 아시는 대로 장애인방송은 장애인 시청복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것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강조가 되어 왔습니다. 방통위도 그에 따라서 쪽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KT 아현국사 사고 때문에 KBS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유탄을 맞은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백본망(Backbone network)을 보강하게 된 것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가 평가도 하고 심의·의결했기 때문에 저는 이 원안에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제가 추가로 드릴 말씀인데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비율, KBS에서 자막방송을 99.9%밖에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KBS 본사를 전체 놓고 보면 수어방송 편성의무 목표치가 5%이지 않습니까? KBS가 제일 낮습니다. 6.4%, 5%를 겨우 넘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못해서 지켰다는 것 밖에는 안 됩니다. 다른 지상파들 보십시오. MBC 8%가 넘었지요. SBS도 7%를 넘고 있습니다. EBS도 7%가 넘었습니다. KBS만 6.4%입니다. 그리고 지방총국들 춘천KBS총국은 10%를 넘습니다. 수어방송 5% 목표보다 2배로 하고 있습니다. 왜 KBS 본사는 장애인방송에 대한 의무비율을 가장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국가기간방송이 가장 인식이 낮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 인식이 제일 낮다는 것입니다. 수치가 말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사업자가 각성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배춘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KBS 국가기간방송의 특성이 있으니까 비율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해 주고 잘해 달라는 협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책적으로는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지금 보고드리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미달성 사업자에 대해 제작비를 감액하는 정책이 주였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려는 것이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 달성률이 있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작지원비를 줄 때 좀 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맞습니다. 그런 방안이라도 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야지, KBS 본사가 가장 낮습니다. 지역 방송사들보다 더 낮습니다. 지역방송사들은 평균 거의 10%를 육박합니다. 딱 KBS 본사 하나만 6.4%입니다. 5%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방송국이 이 정도로 낮은 복지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을 지켰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장애인 복지는 선진국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원래 영국 기준을 설정했고 어느 정도 그것이 달성됐다면 선진국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치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고삼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스스로 이미 다 달성된 부분에서 조금씩 더 높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연구해 주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에 모든 방송사들이 망을 이중화하는 것을 철저히 점검해 보시고 혹시 안 된 곳이 있다면 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비상사태에 대비한 망 이중화 작업을 반드시 하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KBS 문제입니다. KBS 이사회가 지난주에 다수이사들만 참석한 가운데 운영규정을 통과시켜서 4가지 조항을 고치거나 신설했습니다. 첫 번째가 원만한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장은 해당 이사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방송법에서 동등한 이사 지위를 부여받은 이사들끼리 누가 누구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까? 의장인 이사장도 이사들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권한과 지위를 이사장이 누리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국회법도 보면 각종 회의에서 퇴장명령은 방청객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대한민국 어떤 회의제도 회의에 참석하는 정규 구성원들을 강제퇴장시키는 경우가 있습니까? 두 번째, 이사 중 누군가가 토론 종결을 요구하는 보조동의안을 제출하면 더 이상 토론이 진행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수이사들이 정당한 문제제기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면 누군가가 여권 이사 중 보조동의안을 내서 토론을 강제로 끝낼 수 있는 그런 독소조항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의장 결정에 다른 의견이 있는 이사의 경우에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는데 기회를 딱 한 번만 줍니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다수이사들의 뜻대로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것이고, 소수이사들의 견제 또는 반대의견의 표명기회조차도 막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사는 직무상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 재임은 물론 퇴임 후에도, 다시 말하면 평생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들어 있습니다. 물론 사적인 이득을 보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해야 마땅하지만 공익을 위하거나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언론에 공개하고, 또 공론화하는 것까지 막는다면 이사들은 그저 병어리 거수기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같은 KBS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은 방송법과 KBS 정관이 정한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조항 논란이 있고, 또 소수이사들의 정당한 의견개진을 원천 봉쇄하고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막으려는 그런 비민주적 발상이라고 봅니다. KBS 공사법이 제정되고 개정된 이후에 이사회를 관행적으로 여야 7:4 비율로 구성해 온 배경은 다수이사들의 일반 독주와 횡포를 막고 소수이사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자는 이런 취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의 다수이사들로 통과시킨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대로 진행된다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사는 회의 중에 강제퇴장당하고, 의사진행발언도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고, 토론도 강제 종결되고, 평생 KBS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야 하는, 그야말로 소수이사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KBS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가 여권 친화적인 다수이사들의 일방적 결정으로 KBS의 모든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면 가뜩이나 정권 홍보방송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KBS가 공영방송의 엄중한 직분을 어기고 한쪽 국민들만 바라보는 그런 반쪽짜리 외눈박이 방송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제 KBS 소수이사들이 방통위를 방문해서 이사회 운영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하는 민원신청서를 접수시켰는데 사무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습니다. 방송정책국장이 마침 자리에 계시니까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일단 어제 민원이 들어와서 접수를 했고 저희가 검토해 보겠지만 사무처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자문받는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KBS 이사회가 방통위와 독립적으로 설치된 취지와 이사회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이사회 회의 결과 보고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을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舊 방송위 시절부터 KBS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이사회 운영에 대해 방통위가 개입한 적이 없고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어떻게 봐야 할지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또 KBS라는 특성 자체가 독립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방통위가 이사 추천 권한 외에는 사실상 이사 임명 권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관이 있지만 정관 승인 정도만 있지, 이사회 운영규정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에게 보고되는 바도 없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전례가 없다고 해서 그냥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저는 이것을 왜 문제제기하느냐 하면 이번 KBS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이 근본적으로 민주적인 운영 원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KBS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니까? 각계의 다양한 분야 시청자를 대표하는 이사들로 구성된, 또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임명된 KBS 이사들이 이사회에 출석해서 자유롭게 의견개진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소수이사들의 자유로운 참여권을 박탈하고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법 규정을 떠나서라도 상식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가뜰이나 KBS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빠진 시점에서 수많은 현안들이 쌓여 있는데 기껏 짜낸 아이디어가 소수이사들 따돌리고 재갈을 물리고 원천 봉쇄하고 다수이사들만으로 모든 결정을 해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 지금 KBS가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는데 모든 것이 엉망입니다. 이것을 소수이사들끼리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고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찾아내야 할 시점에 이것이 무슨 일인지 정말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법에 규정된 대로 할 수밖에 없지만 공영방송이 제대로 충실하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감독해야 할 규제기관으로서 잘 들여다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우리 방통위가 당연히 KBS 이사회 운영에 관여할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어디에도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KBS 이사회 안건이 이렇게 의결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논의된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그 사이 제가 듣기로 이사들이 전원 참여해서 계속 논의해 온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사회 논의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경위를 한번 파악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제가 더 말씀드리면 그동안 경험에 의하면 이사회 회의가 심지어 신문에 난 뒤에 저희에게 비공식적으로 알려주는 수준이지, 이사회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신문에 나더라도 이사회 회의 경과 이런 내용들에 대해 사실상 저희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KBS도 그런 관행들이 없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 경위에 대해서는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저는 KBS 이사회 운영규정과 관련된 이 번 논란이 국가기간방송인 KBS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의 운영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방송법에는 입법 목적과 취지에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그리고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철저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의 목적상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방송 편성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할 수 있는 것은 KBS 이사 추천권 외에는 없고, 이것 역시 저희가 임명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임명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방통위는 법에 따라 KBS 정관 변경사항이 있으면 인가하는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예.

○ 허 옥 상임위원

- 그리고 이사회 운영규정의 개정은 KBS 정관 제13조의2제5항에 이사회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운영에 관련된 사안들을 스스로 변경한 것을 방통위에 유권 해석 해 달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영방송 KBS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은 엄연히 KBS 이사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회에 대한 책임은 다수 이사만의 책임이 아니라 소수이사 역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사회 운영규정은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이사회가 그 운영규정을 바꾸는 것 입니다. 소수 이사들이 '나 이것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것 문제 있습니다'라고 방통위에 와서 유권해석 해 달라는 상황을 보고이 분들이 과연 국가기간방송인 KBS를 제대로 관리 감독할 만한 자질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적 자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규정의 개정조차도 이사회가 스스로 할 수 없다면 KBS의 경영진과 직원들 그리고 시청자들이 과연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KBS 이사회 운영규정은 여러 차례 논의 끝에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KBS 조직 내부에서 규정 개폐에 대한 점검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개정되었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수이사들이 이사회 운영규정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내고 재논의하자고 하면 될 것입니다. 방통위에 유권해석해 달라는 것은 방송법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승인해 준 KBS 정관에 따라 이사회 운영규정과 관련해서 규정을 개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KBS 이사님들이 KBS의 위기상황, 방송환경 전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들을 더 협의해서 KBS 이사회가 제 역할, 제 자리를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에 대한 반박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제가 말씀드리더라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박근혜 정부 3년 내내 방통위원을 했지 않습니까? KBS 이사회에서 온갖 문제가 있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입한 적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 소수·다수라기보다도 몇 분의 이사들의 발언들에 대해 거의 제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는 어떤 식으로 운영했느냐 하면 무조건 다수결입니다. 토론 시간도 별로 주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안건 올리고 반대의견 나오면 무조건 다수결로 했습니다. 다 퇴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소수이사들께서 방통위에 개입해 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사회 이사 분들은 다들 사회의 명망가신데 어디로부터 추천을 받았든지 간에 그런 분들께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지, 이 문제를 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저는 공영방송사의 이사회 이사들은 한 분 한 분이 시청자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사들의 활동이 방해받거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운영규정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한번 우리가 그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과정에도 나왔지만 KBS 이사회의 운영사항을 보면 비토크라시(Vetocracy)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파당정치지요. 그런데 비토크라시라는 용어는 다수가 독단, 독선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독단에 의해 상대의 정책이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또 그래서

그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사회 원칙,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원칙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수결입니다. 그런데 소수에 의해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다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관련된 규정을 개정해서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것이 다수에 의한 전체주의적 발상이 아니라, 소수이신 분들이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극단적인 과당정치, 그러한 행태에 대한 방지책으로 이번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밀유지 준수, 왜 이것이 나왔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수 측 이사들께서는 특정 소수이사들께서 특정 야당에 논의된 자료들을 그대로 제공해서 정쟁화한다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비공개 자료에 대해서는 이사들이라 할지라도 언론이나 정당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논란이 있고, 또 보는 시각에 따라 찬반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들께서 지혜를 발휘하셔서 이사회 내부에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밖으로까지 가지고 나오시고, 변호사를 대동해서 기자회견하시고, 이것이 과연 공영방송 이사들께서 하실 행위인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표철수 상임위원

- 시점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모시고 방통위 상임위원으로서 활동해 오고 있었는데 위원장께서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않으시고 도중에 물러나시는 국면을 맞아서 상임위원으로서 대단히 면구스럽다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되어서 합의제 정신으로 운영되는 독립기관의 성격을 갖는 곳인데 수장이신 위원장께서 도중에 물러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보좌를 잘못된 탓이 아닐까 하는 스스로의 자괴감도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조기에 물러나심에 따라 조직의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국면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잘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제 사퇴 변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하거나 토를 달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사전에 여러분들과 상의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했더라면 말렸을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상의를 못 드린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찍 사퇴하더라도 새로 오시는 분이 잘 이끌어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역시 그분도 제4기의 임기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제4기가 추구해 왔던 정책이나 비전을 역시 공유하면서, 특히 사무처 중심으로 지금까지 해 오던 일, 그리고 앞으로 달성해야 할 것들을 잘 추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 네 분 위원님께서 남아 계시기 때문에 저의 진퇴와는 상관없이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제가 없을 때보다 더 잘 굴러갈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민감한 부분에 대해 또 표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다만, 저는 위원장님 스스로 물러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의미나 향간에 떠도는 외압의 실체가 있나 없나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은 민감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도록 방통위 설치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방송의 독립을 위해 독립된 기관으로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 그런 기능을 해야 하는 정부기관인데 앞으로도 정치적 목적이나 정권의 편익에 의해 방통위원회의 구성원인 위원장, 또 상임위원이 어떤 간섭을 받거나 압력을 받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겠다, 그래서 반드시 방송의 독립이 지켜져야겠다는 원칙이 저는 끝까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나 혹시 제가 어떤 압력에 의해 자의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뉘앙스가 있는 것이라면, 아마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닐 것이고, 앞으로 새로운 분도 잘해 주기를 바란다는 뜻일 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런 뉘앙스가 있었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립니다. 여러분 네 분께서 또 처장님, 사무처에서 나머지 제4기 임기 1년 동안 잘 마무리해 줄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차기 회의는 대내외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9년 제3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31분 폐회 】